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34
----------	-----

제출년월일 : 2006. 6.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새로이 개정·공포되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자치구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법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 법 제19조(기금의 재원)
- 법 제20조(기금의 용도)
- 법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나. 예산조치 :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 세입조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06. 3. 2 ~ 3. 22)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